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20 발의연월일: 2024. 11. 22.

발 의 자: 안호영・이학영・이원택

어기구・윤준병・주철현

정을호 · 박희승 · 소병훈

박홍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업인과 귀 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·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·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·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·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5조).

법률 제 호

귀농어 •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~	제5조(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~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
	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
	할 때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
	인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<u>⑤</u> ~ <u>⑦</u> (생 략)	<u>⑥</u> ~ <u>⑧</u> (현행 제5항부터 제7
	항까지와 같음)